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2510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1. 05. 28.
- 다. 회 부 일 : 2021. 06. 01.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43,338백만원
- 징수결정액 : 246,710백만원
- 실제수납액 : 244,799백만원
- 불납결손액 : 5백만원
- 미 수 납 액 : 1,907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2%(전년도 99.2%)임.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일 반 회 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세외수입	65,903	68,930	67,018	5	1,907	97.2
경상적세외수입	40,791	44,157	44,116	—	41	99.9
임시적세외수입	25,111	24,773	22,902	5	1,866	92.4
지방교부세	4,240	4,523	4,523	—	—	100.0
지방교부세	4,240	4,523	4,523	—	—	100.0
보조금	172,238	172,482	172,482	—	—	100.0
국고보조금등	172,238	172,482	172,482	—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57	775	775	—	—	100.0
보전수입등	957	775	775	—	—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601,065백만원
- 예산증감 : 30,081백만원
- 예산현액 : 631,146백만원
- 지 출 액 : 606,565백만원
- 이 월 액 : 9,258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1,154백만원
- 불 용 액 : 14,169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2%(전년도 3.0%)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4,169	2,435		1,163	404	10,167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 율 (%)
총 예 산	631,146	606,565	9,258	1,154	14,169	2.2
사 업 예 산 계	622,454	599,042	9,258	1,148	13,006	2.1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255,053	241,168	7,930	581	5,374	2.1
시민건강수준 향상	149,590	147,760	-	19	1,810	1.2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12,060	11,654	-	49	356	3.0
생활보건 관리 향상	149,018	147,076	382	185	1,375	0.9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5,763	5,419	20	15	308	5.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	150	129	-	-	21	13.9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20,209	18,277	926	83	924	4.6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10,118	9,321	-	8	789	7.8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은평병원)	6,743	6,125	-	64	554	8.2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서북병원)	13,750	12,112	-	143	1,495	10.9
일 반 예 산 계	8,692	7,523	-	6	1,162	13.4
기 본 경 비	7,253	6,592	-	-	661	9.1
인 력 운 영 비	644	632	-	6	5	0.8
재 무 활 동	794	298	-	-	496	62.5

- 가. 예산 이용 : 없음
- 나. 예산 전용 : 30건 3,260백만원
- 다. 예산 이체 : 2건 4,538백만원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19건 1,041백만원
- 마. 예비비 사용 : 14건 16,011백만원
-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21건 9,258백만원
 - 명시이월 : 6건 2,806백만원
 - 사고이월 : 15건 6,452백만원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령액 : 172,482백만원
 - 집행액 : 170,066백만원
 - 이월액 : 56백만원
 - 집행잔액 : 2,410백만원

3. 기금결산

- 기금조성현황

〈 2020년도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0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식품진흥기금	65,175	△391	2,685	3,077	64,783

- 기금결산현황

〈 2020년도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7,360	계	7,360
융자금회수	335	비용자성사업비	2,393
예탁금회수	-	융자성사업비	683
예치금회수	4,675	기본경비	1
이자수입	1,128	기타지출	-
기타수입	1,222	예치금	4,283
		예탁금	-

4. 채권현재액 : 5,536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도말 시민건강국 관리 공유재산

- 토지 284,424 m^2 750,675백만원,

- 건물 395,963 m^2 489,992백만원,

- 기타 69건 8,196백만원,

총 1,248,863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0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35,463	14,097	697	1,248,863
행정 재산	계	1,234,765	14,097	-	1,248,863
	공용재산	1,068,280	14,025	-	1,082,305
	공공용재산	166,485	72	-	166,557
일반재산		697	-	697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도말 시민건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803개, 현재액 14,505백만원임.

〈 2020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9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기타	소계	
합계	수량	737	96	19	57	172	20	57	29	106	803
	금액	14,045	1,009	59	610	1,679	428	466	324	1,218	14,505
일반회계	수량	737	96	19	57	172	20	57	29	106	803
	금액	14,045	1,009	59	610	1,679	428	466	324	1,218	14,505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33억 3천8백만원으로, 2,467억 1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인 2,447억 9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19억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0년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2019년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2018년도	193,090	195,488	193,907	79	1,502	99.2

〈표〉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일 반 회 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세외수입	65,903	68,930	67,018	5	1,907	97.2
경상적세외수입	40,791	44,157	44,116	-	41	99.9
임시적세외수입	25,111	24,773	22,902	5	1,866	92.4
지방교부세	4,240	4,523	4,523	-	-	100.0
지방교부세	4,240	4,523	4,523	-	-	100.0
보조금	172,238	172,482	172,482	-	-	100.0
국고보조금등	172,238	172,482	172,482	-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57	775	775	-	-	100.0
보전수입등	957	775	775	-	-	100.0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2,447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1,985억 6천 4백만원) 대비 529억 9천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 실제 수납액(결산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2018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244,799	100.0	198,565	100.0	193,907	100.0
세외수입	67,018	27.38	71,657	36.1	67,039	34.57
지방 교부세	4,523	1.85	100	0.05	250	0.13
보조금	172,482	70.46	126,269	63.59	125,820	64.8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75	0.32	539	0.27	798	0.41

- 시민건강국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해 전년보다 529억 9,725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조금은 1,72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443억 원이 증가한 수치임. 이는 회계연도 중 국비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이 318억 2,900만원으로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종 국고보조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임.

〈표〉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보조금 주요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편성금액	주요편성내역
1	7,793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2	7,500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호흡기 전담클리닉)
3	3,712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4	1,900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5	1,130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총 4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긴급교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지방교부세 주요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편성금액	편성일자	주요편성내역
합계	4,240		
1	1,040	20.3.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교부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 · 기숙사 입소학생 선제검사 시범운영 · 해외입국자 및 이태원클럽관련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2	3,200	20.12.2	· 코로나19 긴급 이동병상 설치운영

나. 세입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필요

-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과부족 상세사유
공유재산임대료	329,593	136,218	136,218	△193,375	(서북병원)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에 따라 기존임대료에서 50%감면 등
기타사용료	38,750	150,523	150,523	111,773	(보건의료정책과)(구)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발생 등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964	320	320	△644	(은평병원) 재활용품 시장가격하락과 최저인건비상승에 따라 기존 재활용 판매수거에서 무상수거로 변경
주차요금수입	0	5,712	5,712	5,712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 부설주차장 정기주차요금 수입 발생
과장금	5,289	1,750	1,750	△3,539	(동물보호과)업체의 의견제출(과장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과장금 수납액 감소
과태료	13,090	9,851	5,393	△7,697	(건강증진과)코로나19 로 인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행사 전면 취소, 유동인구 감소, 마스크 착용 등으로 위반행위 감소
불용품매각대	29,304	101,998	101,998	72,694	(보건환경연구원 등)공용차량 불용 처리에 따른 매각대금 발생
그와수입	4,340,943	3,777,394	3,387,738	△953,205	(보건의료정책과 등)민간위탁금 및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 감소
지난년도수입	2,687,710	1,529,525	1,173,440	△1,514,270	(건강증진과 등)자치구 예산 미 확보로 인한 부족수납 발생 등

- 2020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이 세입예산에도 영향을 미쳐 과부족이 발생한 항목이 나타나고 있음.
- 서북병원의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당초 3억 2,959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 3,621만원만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북병원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주차료와 매점 임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0년 2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 및 병원방문객 감소 등으로 수입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요율을 1%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세운 바 있음.
- 이에 서북병원에서는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코로나19 관련 제1차 공유재산 심의회)에 해당 임대료 감면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의 편성에 있어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 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나, 2020년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에는 당초 미편성된 예산액과, 세입예산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결산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음.

(1) 세입예산 미편성 : (구)용인정신병원 사용료

-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세외수입 가운데 기타사용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외수입(기타사용료)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2020년 예산	예산내역	징수결정액	부과내용	실제수납액
	합계	38,750		150,522		150,522
1	보건의료정책과	-		110,685	· (구)용인정신병원 사용료	110,685
2	보건환경연구원	30,244	· 부설주차장 사용료	30,139	· 부설주차장 사용료	30,139
3	어린이병원	-		518	·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전기요금	518
4	은평병원	1,108	· 이동전화 중계설비 전기료	1,388	· 이동전화 중계설비 전기료	1,388
5	서북병원	7,398	·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7,792	·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7,792

- 사용료는 세외수입 가운데 사용료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이란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함.
- 사용료는 개별적 보상원칙에 의해 강제징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비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점이 다를 수 있음.

- 지방세입 예산과목상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하수도, 상수도, 시장, 도축장, 운동장, 공연장, 입장료 및 공원·복지회관·시민회관 등과 기타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건강국에서는 2020년도 세입예산에서 전체 기타사용료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의 (구)용인정신병원 사용료¹⁾와 어린이병원의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전기요금이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로 환자가 감소하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누적 적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시민건강국에서는 2018년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운영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응모기관이 없었으며, 당시 위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재위탁을 포기한 바 있음.
-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는 2019년 2월 15일자로 시립용인정신병원의 폐업을 실시하게 됨.

(구) 용인정신병원 운영 현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상하동 7-1, 9)
- 시설규모 : 대지 3,306 m^2 , 건물 5,765 m^2 (지하1층, 지상5층)

	구분(위치)	면적(m^2)	비고
토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7-1	1,862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일부 점유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1,444	

1) 보고서 15p.참조

계	3,306	
---	-------	--

	구분(층별)	면적(m ²)	용도	비고
건물	1층	977.67	접수, 진료실 등	용인병원유지재단 의 토지1필지(상하 동 553-2) 일부 점유
	2층	1010.00	병실	
	3층	987.35	병실	
	4층	959.78	병실	
	5층	919.82	병실, 사무실 등	
	지하	910.76	식당, 창고 등	
	계	5,765.38		

○ 폐업 전·후 경과 : 1987. 6월 개원 ~ 2019. 2. 15 폐원

-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후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2019년 5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임대해 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음.
- 이러한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9년 7월 11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물·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 26일 자로 사용허가를 통보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허가한 시점이 2019년 7월이었고, 사용료 역시 2019년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구)용인정신병원의 사용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관련된 세입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반영할 여건이 충분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추진일정상의 문제로 인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어려웠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서라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당 안건의 경우 예산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추진과정에서 만전을 기했을 필요가 있었음.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의 정확한 편성을 위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임.

(2) 수입집행에 있어 행정철저 필요 : 주차요금 수입

-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가운데 편성되지 않은 항목인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요금이 571만 2천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주차요금 수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설주차장 사용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임. 부설주차장 수입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월단위 정기주차료는 기타사용료수입-주차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수시부과하는 주차료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음.
 - 해당 수입의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부과한 월단위 정기주차료의 일부가 수납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다른 항목으로 수납된 것임.

※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수입 개요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 ▷ 정기주차료 : 매월 직원 대상 부과
 - ▷ 일반주차료 : 민원인 대상 수시부과
-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시장(보건환경연구원장)

○ 2020년 세입 결산내역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주차요금(부설주차장) : 30,139천원
- 미편성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주차요금수입, 주차요금 : 5,712천원

-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 세외수입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금감면, 경기침체로 인한 과태료 체납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다소 발생해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외수입 편성 단계에서 집행부의 착오로 미편성된 예산과목 역시 나타나고 있음.
- 세입예산의 착오편성은 정확한 세수추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 가운데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던 ‘과징금’, ‘과태료’ 등에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표〉 2020년도 시민건강국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액 부과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과징금	5,289	1,750	1,750	△3,539
과태료	13,090	9,851	5,393	△7,697

〈표〉 시민건강국 과징금 및 과태료 구성내용

예산과목	내 용	부과근거
과징금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사료관리법 제26조
과태료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 10조

- 세외수입의 예산편성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해 추계되고 있음. 2020회계연도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감소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물보호과의 과징금의 경우 부과건수 자체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5,869	9,816	3,916	8,792	7,697	4,077	7,524	500	5,289	1,750

- 시민건강국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추계시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0년의 경우 총 부과건수는 3건, 부과금액 17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과건수에 대비해서는 모두 수납한 것으로, 당초 수립한 세입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2020년도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금액(원)	수납액(원)
1	사료관리법 제11조제2항, 제13조 ²⁾	750,000	750,000
2	사료관리법 제11조제2항, 제13조	500,000	500,000
3	사료관리법 제11조제2항, 제13조	500,000	500,000
계		1,750,000	1,750,000

- 집행부에서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 질 수 있는만큼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사업별 용도와 조건을 지정하여 이전하는 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에서는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과수 교부되거나 미교부 사례가 아래 표와 같이 발생하고 있음.

2) 「사료관리법」제11조(사료의 공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매칭비율에 의한 서울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가내시 및 확정내시를 통하여 지급됨. 서울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자료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이후 국고보조금이 과소하게 확정내시 될 경우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표〉 2020년도 시민건강국 국고보조금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계	국비	시비	국비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1	보건의료정책과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100,000	50,000	50,000	○ 당초 2개소 운영 분 편성하였으나, 구로구 사례관리 위탁종료('19.12.31.)에 따라 '20년 1개소(강북) 운영비 교부
2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4,482,419	2,091,069	2,391,350	1,965,024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타 지자체와의 예산 조정)
3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06,779	1,413,646	1,593,133	1,389,752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타 지자체와의 예산 조정)
4	보건의료정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5,064	323,376	161,688	242,532	○ 당초 4개소 운영 분 편성하였으나, 구로구 중독센터 위탁종료('19.12.31.)에 따라 '20년 3개소(도봉, 강북, 노원) 운영비 교부
5	건강증진과	가져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98,100	2,722,200	3,175,900	2,206,200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지원실적 대비 예산 조정)
6	건강증진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4,000	48,000	56,000	34,316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부족으로 예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계	국비	시비	국비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산 조정)
7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5,300	464,057	541,243	334,793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부족으로 예산 조정)
8	건강증진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0,700	281,943	328,757	273,843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부족으로 예산 조정)
9	감염병관리과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무관리비	68,600	7,300	61,300	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 잠정보류(예산 미교부)
10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 강화-생물테러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000	23,000	23,000	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잠정보류(예산 미교부)
11	감염병관리과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5,000	5,000	0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미교부
12	동물보호과	기축방역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무관리비	86,296	40,800	45,496	7,200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타 지자체와의 예산 조정)
13	동물보호과	기축방역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공공운영비	26,730	13,365	13,365	12,177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타 지자체와의 예산 조정)
14	동물보호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재료비	3,408	2,385	1,023	1,799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타 지자체와의 예산 조정)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계	국비	시비	국비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15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재료비	258,456	129,228	129,228	116,601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
16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식중독 예방 및 관라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국비)	재료비	5,490	1,647	3,843	1,627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
1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인력운영비-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726	35,363	35,363	35,360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
18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25,363	75,144	2,050,219	75,140	○국비 확장내시 감액 변경
1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850	8,850	0	0	○2020년도 국비 세입처리가 누락되어 사업완료분 2021년도 세입 조치 완료함
20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시설비	2,900	2,900	0	0	○2020년도 국비 세입처리가 누락되어 사업완료분 2021년도 세입 조치 완료함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010억 6천5백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액된 예산현액은 6,311억 4천6백만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6,065억 6천5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92억 5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이 11억 5천4백만원으로 남은 집행 잔액은 141억 6천9백만원으로 나타남.
- 집행 잔액은 불용률은 2.2%로 전년도(2019년 불용률 3%) 결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건강국의 불용액 비율은 2018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현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 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0년도	601,065	631,146	606,565	9,258	1,154	14,169	2.2
2019년도	485,681	494,964	465,113	14,070	758	15,023	3.0
2018년도	472,038	477,024	445,461	9,139	530	21,893	4.6

나. 예산의 변경(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의 변경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전용 30건(32억 6천만원), 예산변경 19건(10억 4천1백만원), 예산이체 2건(45억 3천8백만원), 예비비 사용 14건(160억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남.
- 예산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표〉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건수	-	30	19	2	14
승인금액	-	3,260	1,041	4,538	16,011

1) 예산의 전용 사례

-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의 경우 총 30건으로, 전용금액은 32억 6천만원임.
- 특히 2019년도에는 13건이었던 전용이 2020년도에는 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용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의 탄력적 사용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사업 중 기타보상금의 경우 2번의 전용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1억 6,275만원), 예비비까지 편성(17억 3,727만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잔액이 2억 8,05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동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40,000	61,250	2020-05-04 (20.9.4)	7,94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1-12 기타보상금	-	61,250		280,510
2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78,750	45,880	2020-05-04 (20.9.4)	7,94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45,880		2,420
3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32,870	88,224	2020-05-04 (20.9.4)	7,94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88,224		-
4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44,646	101,500	2020-06-01 (20.9.4)	7,94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1-12 기타보상금	61,250	101,500		280,510
5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743,146	109,600	2020-06-24 (20.9.4)	7,94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45,880	109,600		2,420
6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33,546	61,600	2020-06-24 (20.9.4)	7,942
		코로나19	405-01		61,600		55,454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감염병 대응지원	자산및물품취 득비				
7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307-01 의료및구료비	3,129,140	37,000	2020-07 -15 (20.12.1 7)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401-01 시설비	-	37,000		25
8	보건의료정 책과	서울특별 시 서울의료 원 운영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1,673,219	100,000	2020-07 -31 (20.12.1 7)	43,623
		서울특별 시 서울의료 원 운영보조	401-01 시설비	-	100,000		11,842
9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640,000	11,406	2020-08 -07 (20.12.1 7)	-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 보조)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 원)	-	11,406		-
10	보건의료 정책과	시민건강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00	1,960	2020-08 -11 (20.12.1 7)	6,852
		지역보건 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1,960		-
11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보건 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4,500	1,960	2020-08 -11 (20.12.1 7)	11,760
		지역보건 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960	1,960		-
12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 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9,562,869	69,000	2020-11 -11 (21.3.3)	175,790
		재난거점	402-02	161,000	69,000		15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병원 시설장비 확충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13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거점 병원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682,400	150,000	2020-11 -18 (21.3.3)	-
		재난거점 병원 시설장비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230,000	150,000		150,000
14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 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9,493,869	100,000	2020-12 -08 (21.3.3)	175,79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35,630	100,000		135,630
15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781,879	35,630	2020-12 -08 (21.3.3)	94,94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	35,630		135,630
16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746,249	275,000	2020-12 -08 (21.3.3)	94,94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	275,000		-
17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471,249	192,500	2020-12 -08 (21.3.3)	94,94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403-01 자치단체자본 보조	-	192,500		-
18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 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506,752	30,000	2020-12 -18 (21.3.3)	2,565,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5,100,560		30,000	249,186
19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 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476,752	30,000		2,565,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73,000		30,000	27,501
20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 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446,752	290,000		2,565,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81,502		290,000	0
2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적정 외상치료 체계 구축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1,070,000	210,000		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1,502		210,000	0
2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 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1,156,752	170,000		2,565,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		170,000	0
23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 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986,752	510,000		2,565,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 비	-		510,000	0
24	건강증진 과	난임부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9,000	9,000		1,011
		난임부부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25,850		9,000	1,768
25	질병관리 과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78,400	3,000		50,887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급성감염 병 격리치료 비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4,000		3,000	35,900
26	질병관리 과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206-01 재료비	322,000	5,000		5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관 리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000		5,000	0
27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863,755	400,000		16,599
		은평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관리	401-01 시설비	244,249		400,000	5,600
28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57,960	75,000		261
		서북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401-01 시설비	316,600		75,000	19,008
2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1,651,400	60,000		591,191
		서북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401-01 시설비	391,600		60,000	19,008
30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 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1,591,400	25,000		591,191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693,397		25,000	3,231

(1)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 서북병원에서는 12월 한 달 사이에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
공’ 사업에서 2번의 전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결핵, 치매, 노인, 감염병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으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구입, 처치·투약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소모품
- 의약품 이상반응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의료장비 유지보수
- 복약상담지원시스템 정보이용 유지보수
- 의료비(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등
- 조제용 소모품 등

- 또한 해당 사업은 2번의 전용을 통해 8천 5백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억 9,119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관련 불용관련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상세사유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1,566,400	975,209	591,191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감소로 의약품 구입량 감소

-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입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의약품 구입량이 감소한 것을 사유로 들고 있음.
- 그러나 서북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것이 2020년 2월이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외부환경을 고려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추경 등을 실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집행 마감시점인 12월에 2번의 전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예산전용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예산의 변경사용 사례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9건으로, 변경금액은 10억 4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과목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5,000		2020-09- 08	이용자 현원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비 부족예산 변경사용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5,000		
2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8,305		2020-11- 25	특정업무경비 부족분(12월분) 확보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 및 역량강화	204-03 특정업무경비		8,305		
3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5,000		2020-12- 23	고위험집단 및 시설등 선제검사 운행을 위한 예산추가 확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201-01 사무관리비		45,000		
4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197,381		2020-12- 23	시설비 잔액 중 일부를 감리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감리비 지급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401-02 감리비		197,381		
5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4,254		2020-12- 23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회의수당 지급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4,254		
6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48,880		2020-12- 29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직영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예산 변경사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303-01 포상금		148,880		
7	보건의료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402-02 민간자본사업	230,000		2020-12- 31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과목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보조(이전재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재난의 료지원차량)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30,000		국비사업의 내역사업 분리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8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2-01 국내여비	3,002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	202-01 국내여비		3,002	
					2020-02-04	세부내역사업 신규 등록에 따른 예산 변경
9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6-01 재료비	6,356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	206-01 재료비		6,356	
					2020-02-04	세부내역사업 신규 등록에 따른 예산 변경
10	동물보호과	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206-01 재료비	3,408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06-01 재료비		3,408	
					2020-02-05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세부사업명 변경
11	보건환경연 구원 연구지원부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202-04 국제화여비	28,000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202-03 국외업무여비		28,000	
					2020-02-05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외업무수행을 위해 통계목간 예산 변경
12	보건환경연 구원 연구지원부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000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	
					2020-08-19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통계목간 예산변경
13	보건환경연 구원 연구지원부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202-03 국외업무여비	1,369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1,369	
					2020-11-02	2020.1.10. 대기질통합분석 센터 '미세먼지연구 소' 조직개편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예산 부족액 확보
14	보건환경연 구원 연구지원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202-03 국외업무여비	8,000		
					2020-11-12	코로나 19로 인한 국외출장 자체로 재료비(정도관

과목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206-01 재료비		8,000	리용 인증표준물질 및 초차 긴급구매) 변경 사용	
15	보건환경연 구원 연구지원부	유통식품 기회검사 강화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2,000		2020-12- 07	배기형 시약장 구매를 위한 예산변경
		강북 유통농수산물·한 약재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2,000		
16	보건환경연 구원 연구지원부	의약품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5,000		2020-12- 07	배기형 시약장 구매를 위한 예산변경
		강북 유통농수산물·한 약재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5,000		
17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250,000		2020-04- 14	코로나19 안심카선별진료 소 운영에 따른 검체 검사 위탁비의 발생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250,000		
18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70,000		2020-11- 16	예방접종 수요증가에 따른 약제비 예산변경 사용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70,000		
1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호흡기전담클리 닉 설치운영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15,000		2020-12- 08	호흡기전담클리 닉센터 구축을 위한 구조변경 공사 사업비 소요
		서북병원 호흡기전담클리 닉 설치운영 지원	401-01 시설비		15,000		

- 2020년 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시민건강국의 예산변경사용의 건수는 2019년 회계연도 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할 수 있음. 본래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함.

- 국비내시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2020년도 시민건강국 예산변경 내역 가운데 식품정책과의 공유주방안전관리 사업이 그러한 경우임.
- 해당 사업은 당초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의 세부항목으로 편성되어 가내시가 시행되었으나(2019.9.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내역사업명으로 예산을 확정 통보(2019.12.20.)하게 되면서 세부항목의 변경추가를 실시하게 되었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세부사업간의 예산을 변경하고, 그 책임성이 집행부에 있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결산시기가 되지 않으면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예산의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조례, 제정, 개폐 시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2건으로 금액은 45억 3천8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이는 시민건강국 사업 소관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담당부서를 감염병관리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게 된 것임.

〈표〉 시민건강국 2020회계연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회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	사무관리비	943,000	943,000	2020-0 8-04
일반 회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	사무관리비		943,000	
일반 회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594,888	3,594,888	2020-0 8-04
일반 회계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594,888	

(1)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

-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 사업은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
- 서울형 유급평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노동·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0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제도지원 대상기준의 완화와 신청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시행하였음.
 - 제출서류의 경우 8종이었던 공통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총 4종³⁾으로 간소화 하였음.

3) 현재는 서울형 유급평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1차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해당자로 선정될 경우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2종을 추가 제출하면 됨.

〈표〉 연차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 자격제도 비교

변경 기준	기존(2019년)	변경(2020년)
지역가입	입원(검진) 전월기준 3개월 간 지역가입자 유지	입원(검진)일 기준 지역가입자 유지
서울거주	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	입원(검진)일 기준 서울시민 1개월 유지
근로조건	입원(검진) 전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유지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내 24일 근로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일 거주지 거주하는 1)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 ④형제자매 2) 배우자의 ①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②형제자매(시동생, 처형 등) 주민등록표상 다른주소지 거주하는 ①배우자, ②만25세 미만 미혼자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1)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출처: 정혜주 외(2019),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0)에서 재인용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전체 예산액 55억 3,788만원 가운데 55억 3,739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9.9%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2020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총 계	5,537,888	5,537,393	99.9	
사무관리비	943,000	942,505	99.9	- 홍보, 위원회 운영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94,888	4,594,888	100	- 유급병가지원금 :3,844,888 - 인건비등 :750,000

〈표〉 2020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총계	신 청			심 사			지급액	비 고
	입원	검진	입원 + 검진	적합	부적합	조사 중		
8,622	4,776	3,005	841	7,211	1,184	227	3,494	- 적합승인률 86% - 심사완료율 97% - 1인 평균지급액 433천원 - 지원금 집행률 91% - 집행건수 8,061건*

*20년 집행건수 : 8,061건('19년 신청 963건+'20년 신청 7,09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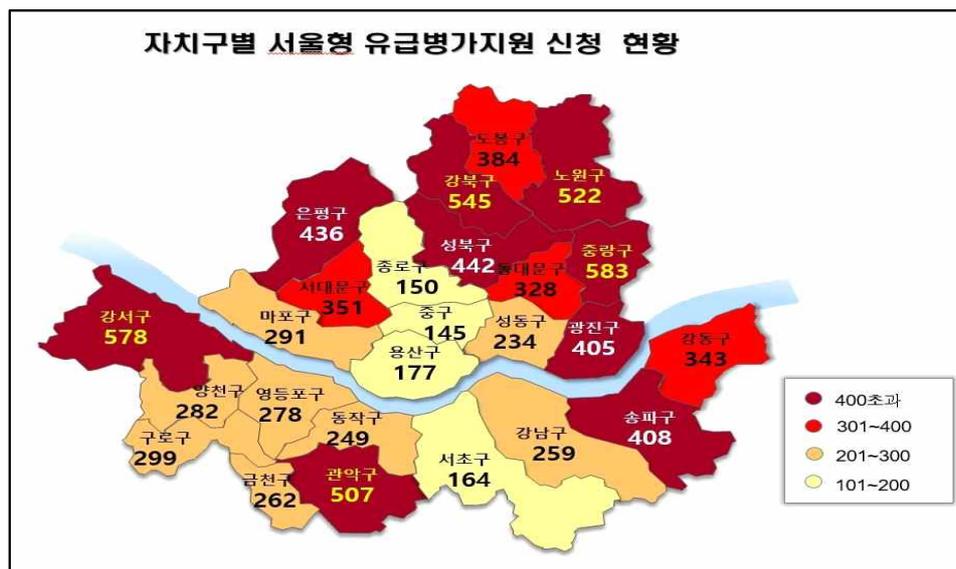
- 해당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무관리비 가운데 과도한 홍보예산 편성이 지적된 바 있음.
- 해당사업의 홍보비는 전체 예산 55억 3,789만원 중 9억 4,251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홍보비 집행내역

('20. 12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액	비 고
계	942,505	
건강보험공단 연계 안내문 및 입원·검진자 안내문 발송	56,791	
사업지침,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자문위원회 운영 등	20,464	
홍보용 배너 제작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	9,778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등 구매	79,870	낙찰차액 495천원 잔액발생
신문광고	50,000	
마을시내버스 외부광고	534,900	
지하철, 전자게시대, 인터넷 등	190,702	

- 그러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인지경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문자가 전체의 48.4%를 차지하는데 비해 TV/라디오/버스/인터넷/신문 등 홍보자료를 통해서 인지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1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⁴⁾
- 집행부에서는 홍보비의 편성과 집행이 사업의 집행률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어떠한 홍보방식이 효율적으로 사업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치구 가운데 가장 신청이 많은 중랑구의 경우 총 583건을 신청한 데 비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신청이 적은 중구의 경우 총 145건으로 자치구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자치구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동북권역에서 전반적으로 신청현황이 높게 나타나는 등 자치구별 인구 수, 권역별 경제수준 격차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사업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사업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020년도 자치구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현황

4) 정재철 외(202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또한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담당부서가 총 3번이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⁵⁾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일관성 있는 추진과 정밀한 사업검토를 위해 담당부서의 변경을 지양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연속적으로 담당부서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직 해당사업은 시행한지 3년이 되지 않는 신규 사업인만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의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는 '유급병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지자체가 사업주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형 상병수당이라고 할 수 있음.⁶⁾
- 그러나 아직 해당 사업을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5%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할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⁷⁾
- 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직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당한 홍보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17%가 홍보예산으로 편성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홍보사업의 성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명시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

5) 보건의료정책과→질병관리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

6) 김근주(2020),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검토사항」, 월간 노동리뷰 2020(9).

7) 정재철 외(202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월제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허용하는 사고이월이 있음. 명시이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허용되나, 사고이월은 재사고 이월할 수 없음.

〈표〉 이월 제도의 구분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요구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결정	예산의 의회의결	자치단체장	예산으로 의회의결
이월액 확정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이월액 확정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격	사전 결정	사업추진과정	사전 결정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	의회의결, 재이월, 사고
사업진행 기간	2년 단, 사고이월 시 3년	2년 지출원인행위액 단, 부대경비 등은 가능	5년 단, 사고이월 시 6년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의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도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2020년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에서는 총 15건, 64억 5,24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민건강국은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규모에서 사고이월 내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시민건강국 최근 3년 사고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8년도	16건	15,517	10,376	5,306	4,736
2019년도	16건	22,858	20,527	9,096	11,435
2020년도	15건	20,392	19,387	13,291	6,452

〈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의 사고이월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시설비	100,000	88,158	43,489	44,669	시유지의 공공미술 작품 설치 시 선행되는 공공미술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요청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됨('20.09.25.~'21.03.31.) 에 따라 지급잔액 이월 필요
2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시설비	7,642,471	7,642,471	6,428,524	978,600	설계변경(추가증축)으로 인하여 공정이 순연됨에 따라 사업비(공사비 등) 이월 필요
3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감리비	954,581	954,335	616,104	338,231	설계변경(추가증축)으로 인하여 공정이 순연됨에 따라 사업비(감리비) 이월 필요
4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무관리비	70,000	70,000	49,000	21,000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 실행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1.02.28.)로 용역대금 지급잔액 이월 필요
5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900,000	308,000	308,000	592,000	코로나19 대응으로 '20.9월 공공야간약국 지정에 따라 '21년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이월 필요
6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3,267,705	3,212,251	62,851	3,149,400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부족에 대비하여 12월에 체결한 이동병상 긴급설치 물품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21.01.31.)로 지급잔액 이월 필요
7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235,000	209,258	162,787	46,471	용역착수보고서 장기간(3개월) 검토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행기관의 재택근무 시행으로 용역기간 부족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8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475,400	424,513	319,003	105,510	코로나19 유행에 의한 지연(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컨설팅) 및 적정사업 수행을 위한 동절기 사업 착수(감염병매개체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1.6월 준공 예정)
9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50,000	230,000		230,000	'20. 9.16. 추경예산 편성하여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개발지침에 따른 절차 수행 후 '20.12월 계약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1.3월 준공 예정)
10	동물복지지원센 터 운영	공공운영비	52,000	50,227	29,857	20,370	홈페이지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20년 6월 ~ 21년 6월로 체결되어,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이월
11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지역거 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92,500	163,957	24,293	139,664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안정성 확보에 충분한 규격을 선정하는 과정 및 조달구매 추진등의 지연으로 이월함
12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연구용역비	200,000	196,000		196,000	미세간이측정망 플랫폼 구축사업 완료시기 조정으로 용역기한 연장됨
13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전산개발비	125,000	114,500		114,500	대기질 모델링 및 진단, 평가시스템 고도화 종료 후 서울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이월함
14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5,491,960	5,287,501	5,201,701	85,800	대기질 모델링 및 진단, 평가시스템 고도화 종료 후 서울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 추진중으로 이월함
15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35,422	435,422	45,240	390,182	공공건축 사전 적정성검토(도시기반시설본부) 결과 사업예산 부족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1)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신규 선정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6월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7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 '16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17년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18년 설계용역 준공, '19년 공사에 착수하였음.

< 사업 추진 개요 >

- 사업명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 위치 : 중랑구 신내로 156(대지면적 38,012.1 m^2)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2지구), 종합의료시설
- 사업규모 : 4·5층, 1,280 m^2
 - 지상 3층, 연면적 3,670 m^2 → 지상 5층, 연면적 4,950 m^2
- 사업기간 : '16.3. ~ '21.8.
- 총사업비 : 5,670백만원(공사비 45.1억)
 - 17,728백만원(공사비 152.1억) → 23,398백만원(공사비 197.2억)
- 향후계획
 - 공사완료(예정) : '21. 8월
 - ※ '21.5월말 기준 공정률 90%
 - 권역응급의료센터 개관 : '21. 12월

- 해당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해 왔음.

〈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2017	명시이월	2,663,541	설계공모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사용자 중심의 공간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치면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월 필요
	사고이월	689,756	
2018	명시이월	4,402,940	설계용역에 따른 사업규모 재조정(연면적, 층수감소)으로 인해 설계용역기간 연장으로 공사 지연되어 이월 필요
	사고이월	2,893,541	
2019	명시이월	1,689,972	기반공사시 지장물 제거 등으로 인해 공기가 약 2개월 가량 지연되어 이월 필요
	사고이월	6,917,344	
2020	사고이월	1,316,831	설계변경(추가증축)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 필요

- 집행부에서는 금년에도 설계변경(추가증축)을 요청하면서 추가증축부분 설계 후 공사가능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겠다는 입장임.
- 또한 최초 투자심사 이후 사업 계획의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최초 계획보다 병상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투자심사 이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 건립계획 변경 과정

(단위 :백만원)

구분	'16년 서울시 투자심사(3차) 확정 계획 ('16.8.)	'17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재방침 계획 ('17.8.)	'18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재방침 계획 ('18.3.)	'18년 최종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18.10~)	'20년 추가 증축 계획 ('20.1.)
예산	18,892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4,212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8,07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23,398백만원)
총 면적	4,350m ²	5,999m ²	3,750m ²	3,670m ²	4,950m ²

구분	'16년 서울시 투자심사(3차) 확정 계획 ('16.8.)	'17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재방침 계획 ('17.8.)	'18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재방침 계획 ('18.3.)	'18년 최종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18.10~)	'20년 추가 증축 계획 ('20.1.)	
규모	총 5층 (지상 4, 지하 1)	총 6층 (지상 5, 지하)	총 3층 (지상 2, 지하)	총 3층 (지상 3)	총 5층 (지상 5)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응급의료센터	34	응급의료센터	31	응급의료센터	27
	중환자실	12	중환자실	12	중환자실	12
	일반병상	31	일반병상	20	일반병상	20
	합계	77	합계	63	합계	59
시행 계획 수정 사유		의료법 개정으로 입원실 면적증가, 지하 주차장 설치 등으로 연면적, 사업비 증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규모축소(일반병상 등 본원과 26% 공동활용)	기존 층수 지하 1층/지상 2층 → 지하 3층으로 변경, 건축법 적용(지상 3층)	감염관리가 특화된 응급의료시설 구현을 위한 공간 추가 확보 필요	

- 서울 동북권역은 지역 내 대형병원의 부족으로 중환자실의 병상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외과계 처치 등이 불가능한 상황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었으나 서울의료원이 2015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으로써 응급의료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그로 인한 반복적인 이월로 인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2016년 최초 투자심사계획 시 총 5층 규모, 77병상이었던 것이 변경과정에서 축소되어 총 3층 규모, 39병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 총 5층 규모, 59병상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였음.
 - 특히 2020년은 최초 심사대비 사업비가 64%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사 재심이 실시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청사 건립 등 부지와 예산이 수반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제반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의 이월은 불용보다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특정사업의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될 경우, 불용된 예산을 활용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부분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된 금액만큼의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불가피한 이월을 제외하고는 이월보다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⁸⁾
- 이월금액의 증가는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예산은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집행 분석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 등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라. 예산 불용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필요

- 예산의 불용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8) 민기(2019).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원인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 월간나라재정(2019.2). 한국재정정보원.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규기관 미선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음.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시민건강국에서는 2020년도에 시민건강국의 총 불용액은 141억 6천 9백만원의 불용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1억원 이상 불용사업은 전체 사업 가운데 32개로 나타나고 있음.
- 시민건강국의 대부분의 불용사업이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전례없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점은 고려해야할 것이나, 이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도 대응할 수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내역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020년도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20,477	17,912	2,565	12.5%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증액 편성하였으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개선금 증액지급(지급기준 개선)으로 시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축소 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7,642	6,429	235	3.1%	20년 시설비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으로 당초 20년 준공으로 잔액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u>20년에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증축행위로 인하여 21년도로 준공연기됨에 따라 설비 관련 시설비 일부가 21년도로 재사고이월되지 못하고 불용됨</u>
3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50	0	150	1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재난거점병원 시설확충 사업 미시행
4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3,568	3,287	281	7.9%	당초 생활치료센터가 중단 없이 운영될 것을 가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세에 따라 일부 센터가 운영이 일시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운영병원의 여건에 따라 투입인원이 달라지는 등의 사유 나타나 집행잔액 발생
5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5,131	4,881	249	4.9%	당초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29개소 설치 지원 예정이었으나, 24개소 설치(81,202천원 미교부) 및 11개소 집행잔액 발생 (의료인력 수급 원활하지 못하여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잔액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6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136	0	136	100.0%	연말 급증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 자체 기간제외사 채용(1개월)을 추진하였으나, 중대본 협의결과 파견의료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결정되어 미집행
7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거점병 원 운영지원(재 난의료지원 차량)	230	0	230	100.0%	국고보조금이 2020.12.31. 교부되어 사업 미시행으로 집행잔액 발생
8	보건의료 정책과	중독관리통 합지원센터 운영	485	364	121	25.0%	당초 4개소 운영분 편성하였으나, 구로구 중독센터 위탁종료('19.12.31.)에 따라 '20년 3개소(도봉, 강북, 노원) 운영비 교부 '20.10.6. 확정내시 변경(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칭(국비, 시비)잔액 발생 - '21년 10월 이후 추경일정 없어 감추경 미실시
9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 설 운영보조	4,482	4,180	303	6.8%	정신재활시설 1개소 폐지('20.4.29.)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0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 설 운영보조	19,394	19,218	176	0.9%	지역정신(찾동) 전담인력 채용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채용되어 집행잔액 발생: 목표 50명(자치구별 2명씩), 실적 40명 채용
11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 강복지센터 운영	11,396	11,223	173	1.5%	보건복지부 고지서 발급지연 등으로 미납액 발생 - '21년 반환금 재편성하여 납부 예정
12	보건의료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305	17	288	94.3%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참여할 신규 자치구 공모시 당초 목표 4개구에서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개구만 참여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14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5	726	279	27.8%	확정내시 변경(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칭시비 잔액 발생
15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898	4,780	1,118	19.0%	확정내시 변경(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칭시비 잔액 발생
16	감염병관리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운영	830	716	114	13.7%	입주시설 관리비 절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17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 지원단 운영	768	600	168	21.9%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심각) 발령에 따른 서울시 대응 지원: 보건소 역량강화 교육실시 등 사업추진 유보 ○ 20.3월~4월지원단원5명 퇴사이후4명미충원에따른 인건비 미사용
18	감염병관리과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005	889	115	11.5%	코로나19 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일부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9	감염병관리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	101,501	100,780	721	0.7%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한시 사업확대(13~18세, 62~64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로 인한 사업비 증가 ○ 인플루엔자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한 접종을 저조로 인한 불용
20	동물보호과	동물교감치유희동 사업	501	350	151	30.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방문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제사유
							곤란하여 집행잔액 일부 발생
21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 부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5,492	5,202	204	3.7%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불용률3.7%)
22	어린이병 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675	559	116	17.2%	○ '20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이 '20.12.30. 연말에 체결되어 부득이 촉탁직 7명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21년도에 지출하여 집행잔액 발생 ○추경편성받은 선별진료소민간의료인력인 건비의경우, 선별검사자 폭증시기 의사의 자진사직 및 구인의 어려움으로 원내의사가 대체투입되어 집행잔액발생
23	어린이병 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1,273	1,082	192	15.1%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 중단 및 단축운영에 따라 의약품(고가백신 등) 사용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24	어린이병 원 원무과	기본경비	862	744	117	13.6%	코로나19에 따른 외래진료 중단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일부 절감
25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760	637	123	16.2%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동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계획 수립시 총 소요예산 월 31,000천원 예상(당초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채용 계획) -추경('20.5월, 수용확정액 118,280천원)으로기간제 근로자등보수예산증액(641, 460천원-)759,740천원) -선별진료소 의사 및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임상병리사(4월한달근무)미 채용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미집행액(123,216천원)발 생
26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608	472	136	22.4%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검체검사비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20. 3월) 및 추경('20. 9월)으로 예산 증액(376,000천원 -) 793,880천원) - 6월부터 서울시민 무증상 선제검사 시작, 8월 2차 대유행, 10월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확진자 전원 등 검체검사비 집행에 다양한 변수 발생 - 겨울철 3차 대유행을 대비하였으나 유증상 선별검사 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면서 미집행 발생
27	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790	683	107	13.5%	허기병상 축소계획 실행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외래, 입원환자 수 대폭 감소, 각종 병원 행사 미실시: 병원의 기본 운영유지에 집행되는 공과금 집행 감소
28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125	1,802	323	15.2%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사 및 민간과견의료인력 등 충원이 힘들어 공백으로 발생한 잔액
2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 관리	1,416	1,230	186	13.1%	급식용역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30	서북병원	서북병원	276	163	113	40.8%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원무과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미충원에 따른 학생검진 중단 ○코로나19감염관리지정병 원으로전환됨에따라,호스피 스병동운영잠정중단 ○사회적응훈련 등 코로나19로인해모든행사취 소및감염병전문병원으로전 환에따른입원중단및외래환 자감소)
31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1,566	975	591	37.7%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감소로 의약품 구입량 감소
32	서북병원 원무과	국고보조금 반환	246	55	191	77.5%	2019년분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지서 발급지연 등으로 미납액 발생 - '21년 반환금 재편성하여 납부 예정

○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 중 전체 예산의 20%이상의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
은 32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20%이
상이면서 불용률이 1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11,040	6,852	62.1
2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15,000	3,654	24.4
3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286,650	70,326	24.5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4	보건의료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재난의료지원차 량)	230,000	69,000	30.0
5	보건의료정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85,064	121,266	25.0
6	보건의료정책과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150,000	75,000	50.0
7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305,286	287,810	94.3
8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5,300	279,071	27.8
9	건강증진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104,000	29,641	28.5
10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수거 검사	361,700	94,570	26.1
11	식품정책과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안전관리	9,000	5,522	61.4
12	식품정책과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5,000	3,800	76.0
13	식품정책과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237,760	57,898	24.4
14	식품정책과	음식관광박람회 홍보지원	20,000	20,000	100.0
15	식품정책과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	9,358	3,379	36.1
16	식품정책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106,900	64,220	60.1
17	감염병관리과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50,000	17,950	35.9
18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생물테러초동대 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46,000	46,000	100.0
19	감염병관리과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병 관리사업	40,000	13,634	34.1
20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 체계 강화	175,000	69,000	39.4
21	감염병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44,469	15,782	35.5
22	동물보호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38,300	7,725	20.2
23	동물보호과	동물교감치유허동 사업	505,000	150,506	29.8
24	동물보호과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2,000	2,000	100.0
25	동물보호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3,408	1,033	30.3
26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793,880	179,381	22.6
27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55,940	28,892	51.6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8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56,090	12,498	22.3
29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275,960	69,503	25.2
30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1,585,600	591,535	37.3
31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지원	25,000	8,815	35.3
32	서북병원 원무과	국고보조금 반환	246,272	190,954	77.5

- 2020 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행사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의 추진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의 시행이 늦춰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물테러감염병 의심사례 발생 시 초동대응기관인 자치구 보건소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며 훈련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전액 불용이 실시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관광박람회 전시 행사는 전면 취소되면서 관련된 사업 비용 역시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 회의가 주된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사업임. 분기별로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 회의를 상반기에는 실시 못하고 하반기에 서면으로만 실시하면서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2020년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세부실적

구분	회의날짜	주요내용	참석인원
2020	2020.8.31. (1차, 서면)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보고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심의(계속) 코로나 19 대응 및 시민건강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26
	2020.12.21. (2차, 서면)	- 제4기 시민건강위원회 구성계획 - 2021년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20

- 그러나 2020년도 상반기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불용시키기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이 필요했으나, 이러한 접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하겠음.

마. 예비비 사용의 적합성 검토

- 시민건강국은 2020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총 14건, 160억 1천1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1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195,254	8,195,254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자치구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2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9,258	69,258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자치구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3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100,560	4,851,374	코로나19 대응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4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민간위탁금	145,500	145,500	코로나19 서울시 심리지원단 운영

연번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동 계 목			
		대응지원				
5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 설 방역물품 지원	자치단체정상 보조금	672	672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국고보조금(방역물 품 지원) 매칭비 확보
6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민간위탁금	27,500	0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7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기타보상금	1,025,933	877,571	코로나19 대응 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8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사무관리비	147,861	144,004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서울시간급이동병 상운영)
9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공공운영비	1,500	0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서울시간급이동병 상운영)
10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기타보상금	711,339	608,471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시생활치료센터의 료지원반운영)
11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민간위탁금	222,083	222,083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서울시간급이동병 상운영)
12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5	4,411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추가 운영 필요 (서울시간급이동병 상운영)
13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 부	의약품 안전성 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19,008	코로나바이러스-19 대비 시중 마스크 비말 투과도 측정 장비 구입
14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 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진단사업	재료비	337,437	315,1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

○ 예비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
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회계연도의 경우 시민건강국에서는 메르스 대응을 위한 진료장비 구매 등을 위해 총 6건, 11억 1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음.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예비비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시·자치구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사용(5건, 100억 2,928만원), 긴급이동병상운영(4건, 3억 7,755만원), 국비보조금 매칭비 확보(1건, 67만 2천원), 선별진료소 운영지원(1건, 51억 1백만원),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1건, 1억 4천6백만원)을 위해 편성됨.
- 그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총 2건, 3억 5,744만원을 편성하였음.
 - 해당 장비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비 시중 마스크 비말 투과도 측정 장비와 코로나바이러스-19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되었음.
- 예비비 편성내역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2,750만원은 상반기 태릉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불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건강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이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1)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

- 예비비 편성 사업 가운데 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 관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심리지원 대응계획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음.
- 시민건강국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계획 등을 참고해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2020년 2월 예비비 승인 요청을 실시함.
- 당초 예비비편성 승인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내에 서울시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심리안정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연구원 인건비와 미디어 용역계약, 자문단 자문지원비, 기타 회의 및 활동비로 산출내역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서울시 COVID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기 사업을 진행한 뒤, 6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사업비를 활용해 2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예비비편성 승인계획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입·퇴원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안정 키트 제작 및 배포, 심리지원단 홍보물품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입퇴원환자 생활지원 매뉴얼 및 심리안정 키트 제작/배포

- 정부 방침에 따른 2주 간의 격리기간 동안의 격리자, 입원환자 대상의 생활지원 및 심리안정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코비드19 입퇴원환자/입퇴소자 증정용 심리안정 키트 제작 및 배포(총 400세트: 입소자 100세트/퇴소자 300세트)
 - 배포처 : 5개 병원 및 기관 (태릉생활치료센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입원/입소자 키트(100 set) 구성 내역

품목	제품명
안내 책자	슬기로운 생활 안내서
컬러링북	- 내 마음의 비밀정원 - 내 마음의 치유 만다라
색연필	BIC 미니 왁스 크레용12색
마사지볼	스트레칭 땅콩볼
스트레칭 로프	웰빙스트레스 로프
부직포주머니	부직포 피치색 60g 복주머니

○ 퇴원/퇴소자 키트(300 set) 구성 내역

품목	제품명	품목	제품명
손소독제	500ml 트리즈 손소독제	안내 브로슈어	퇴원, 퇴소 후 생활 안내 브로슈어
마스크	일월 4중필터 일회용 마스크		부직포 주머니
비타민제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120정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되는 점에서 시 차원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수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예비비를 편성해 가며 긴급하게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보건소,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사업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651억 7천5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8천 5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7천7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47억 8천3백만원임.

〈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0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식품진흥기금	65,175	△391	2,685	3,077	64,783

- 2020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수입은 ‘예치금회수(63.5%)’와 ‘기타수입(16.6%)’, ‘이자수입(15.3%)’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주로 ‘비용자성사업(32.5%)’과 ‘예치금(58.1%)’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7,360	계	7,360
융자금회수	335	비용자성사업비	2,393
예탁금회수	-	융자성사업비	683
예치금회수	4,675	기본경비	1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이자수입	1,128	기타지출	-
기타수입	1,222	예치금	4,283
		예탁금	-

-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성사업 1개, 비융자성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20회계연도 기금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시민건강국 식품건강기금 항목별 사용현황

(단위: 천원, %)

사 업 명		2020년도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융자성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000	682,724	34.1%
비융자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40,900	12,171	29.8%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200	300,404	54.2%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38,028	70.8%
	음식문화 개선	382,000	101,517	26.6%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344,000	342,992	99.7%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405,500	375,950	92.7%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65,000	159,103	96.4%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115,000	78,847	68.6%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52,606	51,210	97.3%
	식품안전 전문교육	55,000	52,250	95.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300	208,362	71.0%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170	98.3%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90,000	81,390	90.4%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20,000	113,483	94.6%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53,000	92.7%

- 2020회계연도 기금사업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외부환경에 요인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음식 문화개선 사업(집행률 26.6%)의 경우, 외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집행률 저조의 가장 큰 요인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집행률 29.8%)의 경우,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대면 위생점검이 축소운영된 것을 주요 사유로 들고 있음.
- 2020 회계연도의 경우 환경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한다고는 하나, 집행부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는 그 사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여러 개인 관계로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에 있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 전년도 결산부터 지적되어 왔음.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편성에 대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